

# 예산총칙

201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91,843,813	20,755,314
일반회계	569,004,872	17,070,146
특별회계	122,838,941	3,685,168
공기업특별회계	32,773,865	983,21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186,202	245,58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587,663	737,630
기타특별회계	90,065,076	2,701,95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247,425	727,423
주택사업특별회계	2,796,868	83,906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3,276,579	98,29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102,103	33,063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1,551,456	46,544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7,117,130	213,514
교통사업특별회계	5,364,139	160,924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44,609,376	1,338,28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성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 840,56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5,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 된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한다.